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37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.

판결 선고 2024. 11. 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3. 10. 7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2024. 9. 20.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,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백효민

별지